

회사 경영의 투명성 향상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검토

고재종*

I. 들어가는 말	과 개선 방향
II.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의 개정	1.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
1. 회사법의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위 강화
2. 증권거래법의 개정	3. 공시제도와 관련한 사전적 통제제도의 신설 필요
3. 소결	4. 이사·감사 등의 윤리강령에 대한 구속력의 인정
III. 주요국의 최근 입법 동향	5. 사외이사제도의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1. 미국의 입법 동향	V. 맺는 말
2. 독일의 입법 동향	
3. 일본의 입법 동향	
4. 소결	
IV.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문제점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1997년 말 갑작스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위기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동 사태의 원인은 당시 기업들의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이용한 무모한 규모 확대 더불어 소수재벌에 의한 문어발식 다각화에 따른 기업 이사, 임원 등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현상과 대외적인 측면에서 대외 경상수지의 악화와 자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 법학박사.

자유화로 인한 외환위기 등에서 찾을 수 있다.¹⁾ 따라서 온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법학자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외환위기로 인한 IMF관리의 문제 해결은 곧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건전성의 확보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한 많은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발생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²⁾이라든가 두산의 비자금 조성 사건³⁾ 등도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II장에서 우리나라의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회사 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회사지배구조의 개선 내용을, 제III장에서는 2002년 이후 주요국의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의 현황을 검토하고,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의 문제점 및 주요국의 관련법을 토대로 그 개선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의 개정

본 장에서는 먼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개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회사법의 개정

동법은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1998년부터 개정을 하기 시작하여 1999년, 2001년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8년 개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1998년 개정(1998. 12. 28 법률 제5591호)은 IMF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1) http://k.daum.net/qna/kin/home/qdetail_view.html?boardid=M&qid=0A49V&q = IMF%20%B0%E6%C1%A6%CO%A7%B1%E2.

2)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10월4일 1심 선고.

3)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510/19/ytni/v10514663.html>; 이와 관련 2005. 11. 19 일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임.

그 내용은 IMF를 타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것도 있지만, 우선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는 공여정책의 하나로 개정된 것도 있다. 즉, 입법 과정이 초단기의 비민주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개정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다.⁴⁾

동법의 개정에서 회사 경영의 투명성 향상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즉, ① 기존에 주주에게 인정하지 않았던 주주총회의 의제 내지 의안의 제안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3/100 이상)에 대하여 인정한 주주제안권을 신설(동 법 제363조의2)하였고, ② 기존의 소수주주의 행사요건이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서 3/100 이상 또는 1/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로 인하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의 완화(동 법 제363조의2, 제366조, 제385조, 제402조 및 제403조, 제466조, 제467조 제520조, 제539조 등)하였다. 둘째,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도입(동 법 제382조의2)하였으며,⁵⁾ 셋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는 별도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동 법 제382조의3)하였다. 넷째,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 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제도를 신설(동 법 제401조의2)하였다.⁶⁾ 또한 1999년 개정에서는 감사 대신 이사회 내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동 법 제415조의2).⁷⁾

(2) 2001년 개정

2001년 7월의 개정(2001. 7. 24 법률 제6488호)은 1998년과 1999년에 회사법의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적인 질곡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기업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구조

4) 이범찬/최준선, 「상법(상)」(삼영사, 2004. 7), 458-459면; 이철송, 「회사법」(박영사, 2005. 2), 25-26면.

5) 물론 동 제도는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상법 제382조의 2 제1항).

6) 이범찬/최준선, 전게서, 459-460면; 이철송, 전게서, 25-26면.

7) 그러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제1항].

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집중투표제의 강제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관한 국회의원 간의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양자의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2001년 개정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 동 법안은 2001년 6월 28일야야 비로소 국회를 통과하고,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⁸⁾

회사 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한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허용(제363조 1항)함으로써 개미주주들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신설(제382조의4)함으로써 이사의 법적인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③ 기존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자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던 것을 소집권자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권자에 대하여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소집권자 아닌 이사의 이사회 소집권을 인정(제390조 2항)함으로써 이사회 불소집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④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보장(제393조 3항)함으로써 업무결정 내지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⁹⁾

2. 증권거래법의 개정

동법은 1998년 2월 24일 법률5521호의 개정 이후 15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2005년 7월 29일 법률7616호이다.¹⁰⁾ 이 중 2000년 1월 개정 이후의 것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2000년 1월 개정

2000년 1월 개정(2000. 1. 21 법률 제6176호)의 주된 내용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8) 이철송, 전게서, 28면.

9) 이철송, 상게서, 28-30면.

10) <http://www.moleg.go.kr/>.

회 및 준법감시인 등의 법적 근거 마련하였다는 점이다.¹¹⁾

먼저, 사외이사와 관련한 것으로, 증권회사(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1항). 이 경우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동 법 동조 제2항). 또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동 법 동조 제3항).¹²⁾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즉, ① 제191조의 12 제3항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③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④ 당해 회사의 주요 주주(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⑤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⑥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⑦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⑧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⑨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제1항의 규정

11) 동 법은 1998년 1월 18일 법률 제5498호 일부 개정 이후 14차례나 더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으로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일부 개정이다. 다만, 본 내용은 중요한 개정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2) 이 내용은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23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여 후단 부분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동 법 동조 5항).

둘째, 감사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동 법 제54조의 6에 의하면, 증권회사(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규정을 두었다(동 법 동조 1항).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동 법 동조 2항).¹³⁾ 또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91조의 1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1조의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제191조의 12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동 법 동조 3항).

셋째, 준법감시인에 관한 것으로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23호의 일부 개정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¹⁴⁾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였으며(증권거래법 제54조의 4 제1·2항), 코스닥 법인에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도입하였다.¹⁵⁾ 이 외에도 2003년 12월의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였으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넷째, 공시에 관한 것으로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이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동법의

13) 이 조항은 2001년 3월 28일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14)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말한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 4 제1항).

15) 그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닥 법인(자산총액 1조원미만의 벤처기업 제외)에도 상장법인과 동일한 사외이사제도 도입, 대규모 코스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규모 상장·코스닥 법인은 소수주주(1%이상)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반드시 주총에 추천토록 의무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시 3%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등이다[은행감독국,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현황 및 개선·보완 방안 검토," 「보고서」(2005. 1), 7-8면].

2001년 및 2004년의 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 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23조의 2에서도 2001년 개정을 하여 공개매수자는 매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였다.

이 외에도 회사지배구조와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신고(제8조),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과 관련한 사업관련해서는 설명서의 제공 및 공람(제12조 1항), 사업설명서에 전자문서의 사용 가능(제13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 신고서의 제출(제21조의 2), 영업보고서에 관한 규정(제47조), 임원의 겸임에 관한 규정(제48조), 자산운용의 건전성(제54조의 3) 등의 개정이 있었다.

(2) 2001년 3월 28일 개정

동법의 개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와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업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동협 회안에 두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¹⁶⁾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 경영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하였으며(법 제54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② 대형 상장법인 또는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일정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현행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였고(법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총 발행주식의 0.5퍼센트 이상에서 0.0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16) <http://www.moleg.go.kr/>.

지분보유요건을 현재 총 발행주식의 3퍼센트 이상에서 1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법 제191조의13, 법 제191조의18 신설), ④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였다(법 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

둘째, 공시제도와 관련한 개정으로는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였다(법 제206조의11·제207조의3 및 제210조).

(3) 2003년 12월 31일 개정

동 개정의 취지는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 제도를 실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다.¹⁷⁾

그 구체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①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하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하여도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법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②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법 제54조의6제2항),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57조),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보수를 기재하도록 하였고(법 제186조의2), ⑤ 불공정 증권거래행위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186조의6 신설), ⑥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하여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하지

17) <http://www.moleg.go.kr/>.

못하도록 하였다(법 제191조의19제1항 신설).

(4) 2005년 7월 29일 개정

동 개정은 2005년 9월 29일 개정하여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동 개정의 취지는 주식취득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에 있다. 그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32조의3(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를 신설하고 제209조(벌칙)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다.¹⁸⁾

3. 소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사태 이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투명하고 건전한 회사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최근 발생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¹⁹⁾이라든가 두산의 비자금 조성 사건²⁰⁾을 들 수 있다. 동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투명하지 못한 회사내부거래, 불투명한 기업공시, 불충실한 감사 기능, 회사 임원 등의 책임 회피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노력하여 온 회사지배구조 개선은 그 의미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회사 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근의 노력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 우리나라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의 파악과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I. 주요국의 최근 입법 동향

18) <http://www.moleg.go.kr/>.

19)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10월 4일 1심 선고.

20)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510/19/ytni/v10514663.html>; 이와 관련 2005. 10. 19 일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임.

1. 미국의 입법 동향

(1) 입법 배경

미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발생한 Enron Co., WorldCom, Qwest 등 대형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하여 그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에 미국은 자국의 회사지배구조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엔론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그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엔론사의 Andrew Fastow 등 기업의 고위 경영진들이 여러 개의 특수목적기구(LJM Co-Investment L.P., Chewco)를 설립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SEC에 대한 공시의무의 미이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회사 내부통제장치가 적절히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²¹⁾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고시, 회계에 관한 것, 둘째, 외부회계감사인에 관한 것, 셋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①과 ②는 연방의회의 사베인즈 - 옥슬리법(Sarbanes - Oxley Act)의 제정으로, ③은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의 개혁안²²⁾의 제시로 나타났다.²³⁾ 다만, 이하에서는 사베인즈 - 옥슬리법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사베인즈 - 옥슬리법의 제정 및 체제

21) 서헌제, “2002년 미국 기업개혁법(Sarbanes - Oxley Act)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제6집 2호)』(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8), 163-165면.

22)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는 상장기준위원회(corporate Accountability and Listing standards committee)를 통하여 보고서(개혁안)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보고서는 2002년 6월 6일에 뉴욕증권거래소 위원회(NYSE,s Board of Directors)에 상정되었다. 이후 동 보고서는 약 2개월 간의 공개 토론(public comment)절차를 거쳐 2002년 8월 1일 총회에서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상장된 회사의 설명책임과 고결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종래 보다도 엄격한 내용을 가진 상장기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결과 이사회(감사위원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개정안을 제한하게 되었다[Kenneth B. Davis, Jr.,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상사법연구(제21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02. 11), 216면].

23) 河村賢治, “米國における企業統治改革の最新動向”, 『商事法務(no. 1636)』(商事法務研究會, 2002. 8), 50頁.

1) 동법의 제정

미국은 엔론 사태 이후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었는데, 일단 의회(상하 양원)는 기업공시의 정확성과 책임을 증진시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관련업계나 이익단체 등의 로비와 선거에 미칠 영향 등 정치적인 이유로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즉, 상원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Sarbanes법을, 하원에서는 기업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Oxley법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양원 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쉽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²⁴⁾

그러나 WorldCom, Qwest 등 대기업들의 회계부정과 경영진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미국의 대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고 그에 따른 주가 폭락의 사태가 초래되었다.²⁵⁾ 이에 따라 상하 양원은 미국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함과 더불어 신속히 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상하 양원은 2002년 7월 25일에 단일안에 합의하고 7월 30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사베인즈 - 옥슬리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동법은 1929년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 이래 최대의 개혁입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²⁶⁾²⁷⁾

2) 동법의 체계

동법은 크게 제1조 약칭 및 목차(Short title; table of Contents), 제2조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제3조 위원회 규정 및 시행(Commission rules and Enforcement)의 3개의 조문(Sections)과 11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은 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제2장은 감사인의 독립(Auditor Independence), 제3장은 회사의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제4장은 재무공시 의무

24) 서헌제, 전계 논문, 181.

25) 엔론 사태 이후에도 WorldCom, Global Crossing, Adelphia Communications 및 Tyco 등 유명한 회사를 포함한 일련의 스캔들이 발생하였었다. 이러한 스캔들은 공중의 주식시장의 신뢰를 크게 동요시켜 주식시장의 급격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Brian Kim, "Recent Development : SARBANES - OXLEY ACT", *Harv. J. on legis.*, 235(2003)].

26) 서헌제, 전계 논문, 182면.

27) 동법의 제정은 EU 및 EU의 주요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쳐 회사지배구조의 개혁이나 회계감사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졌다[松尾直彦, "米国企業會計改革法", 「商事法務(No. 1667)」(商事法務研究會, 2003. 7. 5), 4頁].

규정의 강화(Enhanced Financial Disclosures), 제5장은 분석가의 이해 상충(Analyst Conflicts of Interest), 제6장은 위원회의 자원 및 권한(Commission Resources and Authority), 제7장은 조사 및 보고(Studies and Reports), 제8장은 회사 및 형사사기에 대한 책임(Corporate Criminal Fraud Accountability), 제9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White-color Crime Penalty Enhancements), 제10장은 법인세의 환급(Corporate Tax Returns), 제11장은 법인사기의 책임(Corporate Fraud and Accountability)로 구성되어 있다.²⁸⁾

동법의 규정 대부분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규정은 법 시행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부 규정은 하위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시행이 예정된 것도 있다.²⁹⁾

(3) 사베인즈 - 옥슬리법의 주요 내용

이하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기업회계감독위원회의 설립, 감사인의 독립, 회사의 책임 및 재무공시의 강화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기업회계감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하다.³⁰⁾ 기업회계감독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동 감독위원회의 구성은 총 5인으로 되나 그 중 2인은 반드시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동 위원회 위원은 감독위원회 업무와 병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다른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동 위원회의 권한으로는 ①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등록된 공인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 및 발부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감사 및 관련 인증기준, 품질관리 기준, 윤리 기준을 수립, 수정,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② 등록된 공인회계법인에 대한 조사, ③ 등록된 공인회계법인과 그 관련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 및 징계절차의 수립권 등이 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동 위원회에 대한 감독 및 집행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³¹⁾

28) <http://news.findlaw.com/hdocs/docs/gwbush/sarbanesoxley072302.pdf>.

29) 서헌재, 전계 논문, 182면.

30) 증권선물위원회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의 권한은 ①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②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④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⑤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이다[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둘째, 감사인의 독립(Auditor Independence)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1934)의 규정을 수정하게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① 등록된 공인회계법인 및 회계감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관련자는 감사업무와 더불어 발행인의 감사의뢰인에게 비감사업무³²⁾를 회계감독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의 감사업무를 담당할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³³⁾ 감사를 행한 공인회계법인은 그 결과를 발행인의 감사위원회에 동법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였다.³⁴⁾³⁵⁾

셋째, 법인의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에 관련하여 증권거래법(1934)의 규정을 수정하게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① 발행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 발행인으로부터 컨설팅, 자문 또는 기타 보상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발행인 또는 그 계열사의 관련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② 감사 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문제가 있는 회계 또는 감사에 대한 발행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리에 익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그에 대한 접수, 보관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변호사 및 기타 자문인을 참여시킬 권한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렇게 작성 보고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는 회사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SOA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³⁶⁾ 만약

31) SOA sec. 101-107.

32) 비감사업무에 대하여는 SOA sec. 201에 따라 증권거래법(1934) sec. 10A(g)에 명시하고 있다.

33) 이는 피감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유착관계를 제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4) ① 적용할 제반 주요 회계정책 및 관행,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기준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경영진과 상의한 공개회사의 회계처리 방식과 다른 방식에 대한 정보 및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때의 결과와 회계법인이 선호하는 처리방식, ③ 기타 등록된 회계법인과 발행인 측 경영진 간에 이루어진 경영서신(management letter) 또는 미조정 사안 목록과 같은 중대한 의사소통 관련 문서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였다[SOA sec. 204; SEA sec. 10A(k)].

35) SOA sec. 201-205; 이 외에도 동법에서는 이해상충(제206조), 등록된 공인회계법인의 의무 교체에 관한 연구(제207조), 위원회의 권한(제208조), 주 관할 당국의 고려사항(제209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6) 검토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① 서명한 임원의 보고서 검토, ② 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기재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당해 임원이 알고 있는 한, 사실을 오도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 중 누락한 것이 없다는 사실, ③ 재무제표 및 보고서에 기재한 기타 재무정보가 보고서에 명시된 기한 현재, 또는 그 기간 중에서는 당해 임원이 알고 있는 한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운영 결과에 대하여 제반 주요 사항을 공정하게(fairly)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SOA sec. 302(a)(1)(2)(3)].

이들이 발행인의 재무제표를 심각하게 오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재무제표 감사에 관여하는 독립된 공인회계사에게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 조작 또는 오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받은 상여금 및 이익은 발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³⁷⁾

넷째, 재무공시의무 규정의 강화(Enhanced Financial Disclosures)에 관한 것으로 이 규정 또한 증권거래법(1934)의 규정을 수정하게 하였다. ① 재무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이 재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지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정 조치의 결과를 모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②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되지 않는 주요 부외거래(off - balanced sheet transactions) 등 현재 또는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③ 추정(pro forma) 수치에 대하여는 제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추정 재무자료가 사실을 오도하지 않도록 주요 사실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발행인의 재무 상태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에 의한 운영 결과에 맞춰 조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④ 발행인과 임원 간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인으로 하여금 임원들을 위하여 개인 금융의 형식으로 신용을 제공 내지 유지하거나, 신용 제공을 주선하거나 또는 신용제공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³⁸⁾ 이사나 임원 및 등록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와 관련한 거래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술의 내용에는 (i) 위의 임원 등이 실질적 소유자로 있는 발행인의 주식 총액, (ii) 제출자의 제출일 현재 주식 보유현황,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발생한 보유상태 변동 사항, 증권스왑계약의 매입 및 매각 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³⁹⁾ 이 외

37) SOA sec. 301-304; 이 외에도 제3장에는 임원 및 이사에 대한 금지 및 벌칙(제305조), 연금기금 접근제한기간 중 내부자거래(제306조), 변호사 업무책임에 관한 규칙(제307조), 투자자 보호기금(제30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8) 그러나 주택개량 및 주택건축대출(주택담보대출법 제5조(12 U.S.C. 1464에 의한), 소비자 신용(Truth in Lending Act 제103조(15 U.S.C. 1602)에 의한), 개방형 신용플랜에 의한 신용제공(Truth in Lending Act 제103조(15 U.S.C. 1602)에 의한), 신용카드(Truth in Lending Act 제127조(c)(4)(e)(15 U.S.C. 137(c)(4)(e)에 의한) 또는 본장(title) 제15조에 의하여 등록된 브로커 또는 딜러가 그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장(title) 제7조에 의하여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규정이나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발행인 주식 매입을 위한 신용 제공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입, 거래, 또는 보유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지 아니한다[SOA sec. 402(a);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3(k)(1)(2)].

39) SOA sec. 403(a);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 16(3).

에도 경영진의 내부 통제 평가에 대한 자료를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재무담당임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윤리강령의 채택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나아가, SOA에서는 윤리강령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⁴⁰⁾

2. 독일의 입법 동향

(1) 입법 동향

유럽의 경우 회사지배구조의 문제는 OECD가 1999년 5월에 발표한 「회사지배구조 규범」(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서 주주 중심의 Anglo Saxon식의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택할 것을 권고(법적인 구속력은 없음)하면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⁴¹⁾

하지만, 독일의 경우 당초 ‘OECD의 회사지배구조원리’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영역에서 통제 및 투명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Kontrolle und Transparenz im Unternehmensbereich; KonTraG)의 개정⁴²⁾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이미 OECD 지배구조원리에 못지않은 상당한 수준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⁴³⁾ OECD의 권고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상장회사와는 다른 지배구조를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외국 자본의 조달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⁴⁴⁾ 상장회사(börsennotierten Aktiengesellschaft)⁴⁵⁾를 중심으로 현실에

40) SOA sec. 401-407; 이 외에도 발행인의 정기 공시에 대한 검토 강화(제408조), 실시간 발행인 공시(제409조)에 대한 규정도 하고 있다.

41) 성태균, “해외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 「주식(통권434호)」(증권거래소, 2004. 10), 5면.

42)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즉, 제2차자본시장진흥법(Gesetz über Wertpapierhandel und Änderung börsenrechtlicher und wertpapierrechtlicher Vorschriften-Zweites Finanzmarktförderungsgesetz(BGBl. I, S. 1749 v. 30. 07. 1994), 소규모주식회사법(Gesetz für kleine Aktiengesellschaften und zur Deregulierung des Aktienrechts-kleine AG(BGBl. I, S. 1961 v. 09. 08. 1994), 조직변경법정비법(Gesetz zur Bereinigung weiteren Fortentwicklung des Finanzplatzes Deutschland-Drittes Finanzmarktförderungsgesetz(BGBl. I, S. 529 v. 27. 03. 1998), 무액면주식법(Gesetz über die Zulassung von Stückaktien-StückAG(BGBl. I, S. 590 v. 31.03. 1998), 자본조달간이화법(Kapitalaufnahmeerleichterungsgesetz -KapAEG(BGBl. I, S. 707 v. 23. 04. 1998)의 개정이 있었다.

43) Ulrich Seibert,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Grundsätze der Unternehmensführung und Unternehmenskontrolle für die Welt, AG 1999/8, S.339; Theoder Baums, "Gutachten", 63. DJT 2000, S. 9

44) Schneider/Strenger, Die "Corporate Governance-Grundsätze" der Grundsatzkommission Corporate

맞는 모범적인 지배구조 원리를 새롭게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방면으로 제기 되게 되었다.

그 결과 2001년 7월에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설치된 Baums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회사지배구조 기업경영 -기업통치 - 주식법의 현대화」위원회(이하 Baums위원회)가 150여 개의 제안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⁴⁶⁾ 2002년 7월에 이 제안의 일부를 구체화하여 「투명성 및 공개성법」(TransPuG)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TransPuG가 성립되기 5개월 전에 상장회사의 모범적인 행위규범으로서 독일 회사지배구조기준(Deutschen Corporate Governance Kodex) 또한 제정되었다.⁴⁷⁾ 다만, 동 기준은 법률상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구속력만을 갖는데 불과하다. 어쨌든 TransPuG는 감사회에 관하여 새롭게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주로 독일 회사지배구조기준의 준수 상황의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독일 회사지배구조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독일회사지배구조기준의 주요 내용

1) 동 기준의 구성

기업지배기준은 크게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은 서문(Präambel), 제2는 주주 및 주주총회(Aktionäre und Hauptversammlung), 제3은 이사회와 감사회의 협조(Zusammenwirken von Vorstand und Aufsichtsrat), 제4는 이사회(Vorstand), 제5는 감사회(Aufsichtsrat), 제6은 투명성(Transparenz), 마지막 제7로는 결산과 회계감사(Rechnungslegung und Abschlussprüfung)로 구성되어 있다.

Governance, AG 2000/3, SS. 106, 108.

45) '상장회사'라 함은 그 발행주식이 독일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승인되었거나 또는 장외시장(Freiverkehr:over-the-counter market)에 편입된 회사를 말한다.

46) Baums(Hrsg.), Bericht der Regierungskommission Corporate Governance(2001).; 바움즈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Hommelhoff/Lutter/Schmidt/Schön/Ulmer(Hrsg.), "Corporate Governance", Beihefte der ZHR; 71, 2002.를 참조.

47) 개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는 Ministerial Counsellor Dr. Ulrich Seibert · Federal Ministry of Justice, Bonn, "Control and Transparency in Business(KontraG)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Germany", [Http://www.burkarklaw.com/corporategovernance/]; 神作裕之, "ドイツ資本市場法" · 株式會社の動向(資本市場の活性化に関する研究會報告, 「月刊資本市場200호」(2002), 108頁 등이 있다.

2) 동 기준의 구체적 내용

먼저, ① 주주와 주주총회에 관련한 부분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외(회사지배구조기준 2.3.1, 2.3.2), 주주의 의견권 행사에 있어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동 기준 2.3.3). ② 이사와 감사회의 협조 부분에 있어서는 D & O 보험의 보험료의 자기 부담분을 정하도록 하는 외(동 기준 3.8), 사업보고서(Geschäftsbericht, 법정의 영업보고서(Legebericht)와는 다르다)에 있어서 자사의 회사지배구조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기업지배기준을 일탈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이에 포함되도록 하였다(동 기준 3.10). ③ 이사회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및 그의 보수를 固定部分, 變動部分, 장기적 인센티브 부분으로 나누어 공시하도록 하였다(동 기준 4.2.4, 개인별 공시는 추천 규정), 변동보수는 주가지수의 가치추이 내지 일정한 목표주가의 도달로 정하고, 미리 정해진 비교변수와 관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 기준 4.2.3). ④ 감사회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권고가 행하여지고 있다. 이사와 공동하여 장기적으로 후계자 계획(plan)을 정하도록 하는 것(동 기준 5.1.2), 이사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동 기준 5.1.2),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그 중에서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동 기준 5.3.1, 5.3.2),⁴⁸⁾ 종전의 이사인 감사 등의 자는 2명 이하로 한정할 것(동 기준 5.4.2), 중요한 업무에 대한 경업뿐만 아니라 타사에 있어서 기관기능(Organfunktion) 내지 고문임무를 행사하지 않을 것(동 기준 5.4.2), 상장회사의 이사가 기업집단 외의 상장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것은 5개 회사 이하로 할 것(동 기준 5.4.3), 감사의 보수는 고정부분과 함께

48) Kodex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Kodex 5.3에서 “감사회는 기업의 개별적 상태(den spezifischen Gegebenheiten) 및 그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전문적이고 유용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감사회 업무의 효율을 증진하고 복잡한 사정의 취급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5.3.1.에서는 “각각의 위원장은 규칙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해 감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5.3.2에서는 “감사회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한다. 그것은 특히 결산 및 리스크관리, 결산검사의 필요한 독립성, 결산검사의 감사업무의 성과, 감사의 중점의 결정 및 결산검사의 보수의 결정에 대한 문제를 담당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과거 동일 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여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역할, 위원장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5.3.3.에서는 “감사회는 하나 또는 복수의 위원회가 다루는 바와 마찬가지로 광범한 테마를 지시할 수 있다. 그 내용에는 기업의 전략, 이사의 보수, 투자 및 자금조달 등이 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기타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시를 하지 않았으며, 5.3.4.에서는 “「감사회는 위원회가 감사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이것에 관한 감사회를 대신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원회에 감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업적에 대한 연동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고, 기업집단이 개인적으로 받은 고문 활동의 대가인 급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시되도록 할 것(동 기준 5.4.5), 이익 상반 상황의 공시에 첨부하는 한편 일시적이 아닌 이익상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임할 것(동 기준 5.5)⁴⁹⁾ 등이다. ⑤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분석가(analyst)에게 제공한 정보를 주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고(동 기준 6.3),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공개 등을 권고하고 있다(동 기준 6.4, 6.8 등). ⑥ 결산과 회계감사의 부분에서는 결합 결산서에 스톡옵션 프로그램 및 증권 관련 인센티브 시스템을 기재할 것(동 기준 7.1.3), 컨설턴트부분에서 서비스 제공의 규모를 포함,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그 독립성에 관한 서약서를 받을 것(동 기준 7.2.1)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일본의 입법 동향

(1) 입법 동향

일본 상법은 지난 10년 간의 심각한 경제 불황의 극복과 국제경쟁력의 회복·강화를 위하여 정치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회사법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수차례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예로 평성 9년(1997년)의 입법, 평성 13년(2001년) 12월 12일 법률 제149호로 공포되어 평성 14년(2002년) 5월 1부터 시행된 「상법 및 회사 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 및 평성 14년(2002년) 5월 29일에 공포되고, 동년 평성 15년(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상법 등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 법률」중 회사의 기관에 관한 부분, 마지막으로 평성 17년(2005년) 개정 진행 중에 있는 회사 법제의 현대화 작업을 들 수 있다.

특히, 동 법제의 현대화 작업은 평성14년(2002년)부터 법무성의 법제 심의회 회사법(현대화 관계) 부회⁵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평성 15년 10월에는 부회가 중간적

49)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Kodex 5.5.1에서 “감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5.5.2에서는 “모든 감사회 구성원은 특히 고객, 납입업자, 채권자, 기타 영업상 상대방에게 조인 내지 기관으로서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상반을 감사회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전의 정보공시에 의하여 이익상반의 발생을 방지함과 더불어 5.5.3에서는 “감사회는 그 주주총회에 보고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상반 및 그 취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감사회 구성원의 중대하고 일시적인 아닌 이익상반에 대해서는 해임될 수 있다”고 하여 사후적인 정보제공도 해임의 원인으로 뒀을 명시하였고, 5.5.4에서는 “감사회 구성원의 회사에 대한 조언, 기타 서비스 제공, 청부에 대한 계약은 감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이익상반이 발생할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으로 다룬 「회사법제의 현대화에 관한 요강 시안」(이하 시안이라고 한다)에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절차 및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성16년(2004년) 12월 8일 법제심의회로부터 「회사법제의 현대화에 관한 요강안」(이하 요강안이라고 한다)이 제출되었고 평성17년 2월 9일에 결정되었다.⁵¹⁾ 그리고 동 요강안은 동년 3월 18일에 각의 결정되어 3월 22일에 법안 제출되었다. 이후 동 법안은 5월 17일에 중의원을 통과하였고, 장차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동 요강안이 통과되면 평성 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⁵²⁾ 이하에서는 동 법제의 현대화에 관한 요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동 법제의 현대화에 관한 요강안

1) 요강안의 구성

회사법제의 현대화에 관한 요강 시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크게 6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부에 기본방침, 제2부에 총칙관계, 제3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관계, 제4부 주식회사·유한회사관계, 제5부 외국회사관계, 제6부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⁵³⁾ 이하에서는 제4부에 해당되는 주식회사의 내용 중 회사지배구조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주요 내용

(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결정·공시의 항목은 시안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체제 확립 필요성의 지적을 받아들여 문제로 한 사항이다. 요강안에서는 그 구축의 기본방침을 이사회의 전결사항으로 하고, 당해 결의의 개요를 경영 보고의 기재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대회사에 있어서는 그 구축의 기본방침 결정을 의무로 하도록 하였다.⁵⁴⁾

50) 당시 부회장은 江頭憲治郎 동경대학 교수였다.

51) 相澤 哲, “會社法制の現代化に関する展望”, 「商事法務」(No. 1719), (商事法務研究會, 2005. 1. 5), 46頁.

52) <http://www.istante.jp/news09.html>.

53) 「Jurist」의 별책부록, 「會社法制の現代化に関する要綱試案 同 補足説明」(有斐閣, 2004. 5), 1頁.

(나) 보흠감사의 예선

일본의 현행법상 補欠監査의 豫選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보흠감사의 예선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수가 사임 등에 의하여 흠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총회에서 보흠감사를 선임하여 두고 실제로 감사의 수가 부족할 경우 그 보흠감사가 정식으로 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일본의 현행 회사법 제273조의 3항에 보흠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기존 감사가 사임 등으로 그 후임을 정식으로 선임하고 곧 감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보흠감사의 예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와 관련 실무계에서는 예전부터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다. 그 배경에는 일정수의 사외이사·사내이사를 둘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이사 또는 가감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 많은 비용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임원 등을 선임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정한 자를 미리 선임하여 준비하여 둔다는 점에서 보흠감사의 예선을 긍정하고 있다.⁵⁵⁾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에서는 정관의 정함이 없더라도 예선(豫選)이 가능하고, 그 예선의 효력은 선임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총회시까지로 하는 것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⁵⁶⁾ 요강안에서도 이에 마찬가지로 보흠감사의 예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⁷⁾

(다) 회계참여제도

동 제도는 시안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은 항목인데, 요강안에서 이를 받아들여 공인 회계사·세무사(稅理士) 등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는 당해 계산서류와는 별개로 보존하며, 주주·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는 중소 규모의 회사에 있어서 계산서류의 정확성의 확보에 도움이 주기 위한 것으로 과거부터 제안되어 오던 것을 요강안에서 입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54) 상계 논문, 48頁.

55) Jurist, 전계 별책 부록, 82頁.

56) 商事法務展望, “會社法制の現代化に關する展望,” 「商事法務(No.1719)」(商事法務研究會, 2005. 1. 5), 49頁.

57) Jurist, 전계 별책 부록, 15頁.

4. 소결

지금까지 2002년 이후 주요국의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경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SOA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입법의 특성은 대부분 회사자치에 맡겨 두었던 여러 가지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대부분 강행규정화하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록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독일 또한 2002년 7월 19일에 성립된 「투명성 및 공개성법」(TransPuG)⁵⁹⁾을 통해 회사지배구조 기준의 준수 상황의 공시를 의무화하였는데, 그 중심도 결국 감사의 투명성과 공시의무의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또한 기존의 많은 노력과 더불어 실무계를 통하여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 경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IV.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

(1) 비감사업무사항의 제공기준의 설치 필요

우리나라 현행 회사법의 1999년 개정과 증권거래법 2000년 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그 권한은 기존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상법 제415조의 2 제6항, 제412조 1항). 따라서 감사위원이 업무의 적법성감사뿐만 아니라 업무의 타당성도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⁶⁰⁾ 나아가, 감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감사업무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의 SOA의 경우 감사업무 이외의 비감사업무사항을 별도로 구별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절차(사전 승인)를 받지 않으면 감사의뢰인 등에게 그 내용을 제공

58) 商事法務展望, 상계 논문, 49頁.

59) Gesetz zur witeren Reform des Aktien-und Bilanzrechts, zu Transparenz und Publizität(Transparentz und Publizitätsgesetz)(BGBl. I, S. 2681 v. 19. 07. 2002).

60) 다수설의 경우 상법상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성감사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정찬형, 「회사법강의」(박영사, 2003), 677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영 투명성 및 건전성과 관련한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⁶¹⁾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처럼 비감사업무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비밀유지를 유지하여 그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 승인을 얻어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감사위원의 자격의 재검토

현행 회사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3인 이상의 이사로 하며, 그 중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단서). 또한 증권거래법에서는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이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 6 제2항, 제191조의 17 제2항). 이는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및 감사의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SOA는 모든 공개회사는 회사 내에서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건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익명에 의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 이용권한 및 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금융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감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국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3) 보흠감사 예선 제도의 도입 검토

현행 회사법 및 금융관련 법률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위원의 결원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사가 결원이 된 경우⁶²⁾에는 가이사⁶³⁾를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61) 물론 이러한 사전 승인 절차에는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있다.

62) 그 사유는 법원의 경우 임기만료,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만을 들고 있으나, 이사의 사망·해임 등 어떤 사유에서든 정원을 결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이철송, 전제 회사법, 524면].

63) 일시이사 내지 임시이사라고도 한다. 임시이사라는 개념은 최근 대법원 2001. 12. 6 결정, 2001

의하여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동 위원이 결원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언급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만, 감사의 지위가 상실하더라도 곧 이사의 지위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위원의 사망한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이사의 지위는 가이사를 선임하여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가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보완을 위하여 최근 일본에서 입법 과정 중에 있는 보충감사의 예선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위 강화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수리와 감사인의 감사업무 운영에 관한 감리 업무를 한다(외감법 제1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관계 회사 및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회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와 재산 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외감법 제15조의 2 제1항).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 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단지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뿐이다.

하지만, 미국의 사베인 - 옥슬리법의 경우 독립된 공개회사 회계감독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비록 미국 연방정부의 기구가 아닌 비영리법인이지만, 연방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아래 공개회사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을 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회계법인을 감독하며 공개회사의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관리기준, 윤리, 독립성 기준을 제정하고, 회계법인과 회계전문가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등록된 회계법인과 그와 관련된 개인을 조사하여 처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113 사건 사례에서 사용하였다[이철송, 전계 회사법, 524면].

생각건대, 감시 기능의 효율화와 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적 감사 제도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외부적 감시제도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내의 증권선물위원회를 실질적 감시기구화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의 공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위원회와 같은 정도의 위원회로 그 위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3. 공시제도와 관련한 사전적 통제제도의 신설 필요

우리나라 현행 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에게 회계 및 업무의 감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일의 최소 6주간 전까지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의 3, 제415조의 2 제6항). 그런데 이사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 관행에 의하여 작성하기만 하면 되고(상법 제30조 1항, 제29조 2항), 그 이외의 어떠한 간섭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계산서류와는 별개로 보존하여야 하며, 주주 및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계산서류를 작성할 때에 경영의 투명성 향상 및 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적 통제제도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이사·감사 등의 윤리강령에 대한 구속력의 인정

우리나라 현행 회사법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는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나아가 비밀유지의무 등을 다한다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감사로서 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 규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어나 감사 등의 그들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으로써 준법감시인을 두어 임직원 윤리 강령의 제정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54조의 4 제 1·2항). 하지만, 동 조직은 회사의 기관이 아니므로 그가 제정한 윤리강령은 법적인 구속력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SOA는 이사, 감사 등에게 그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윤리 강령을 사전에 법으로 제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윤리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만약 이러한 윤리강령 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즉시 공시하는 의무 규정까지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도덕적 해이 현상에 무감각해진 이어나 감사에게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의무위반을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이어나 감사 및 기타 임원진들로 하여금 그들의 업무수행을 함에 필요한 윤리강령을 정관이나 법 등에 규정할 것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5. 사외이사제도의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사외이사란 사내이사와 구별되는 이사회내의 구성원으로 이사회 경영감독 기능의 강화 및 이사의 역할 제고 등을 위하여 회사 내지 회사 내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 금융 사태 이후 회사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현행 회사법에 의하면,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별없이 모두 이사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사외이사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동법 제 54조의 5,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조 19호). 하지만, 사외이사가 이사회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라고 하여 업무결정 및 업무를 집행하는 상근이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 최근 사외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임원과 비 업무집행임원을 구별하여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내이사와 구별되는 사외이사의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V. 맺는 말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계속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한 많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다.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Enron Co., WorldCom, Qwest 등 회사의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터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미국은 기존의 회사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베인즈 - 옥슬리법의 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독일 및 일본도 계속하여 회사법 및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도 현행법 제도의 문제점을 신속히 찾아 그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미국 등 회사지배구조가 잘 정비된 나라의 법 제도를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위의 제4장에서 우리나라의 회사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향을 이미 검토하였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회사 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회사지배구조의 개선, 특히 감사 제도의 독립성과 관련한 문제의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고재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사베인즈 - 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회사법제의 현대화,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보姆감사제도

독일회사지배구조기준(Corporate governance in germany)

기업회계의 투명성(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audit)

감사의 독립성(independent of Audit),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Transparency and Soundness of Corporation's Management

Koh, Jae-Jong

We have made every possible effort to the problem improvemen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overcom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situation. Nevertheless, many unsolved problems occurred continually. In the recent day, there are the cases like the Everland's irregular donation event and the Doosans's slush fund event.

So, in the chapter 2 of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oroughly the contents which improve the our present corporate law and related laws. In the chapter 3, investigate the content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n which the nations like America, Germany, Japan, etc, enacted and amended of the related acts after 2002 and in the chapter 4, I will point out a lot of problems about the present law system and indicate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related law in our country.

Concretely, as mentioned in this article, the first, I think that we will strive for complementary measures on the Independence of Audit or the Audit committee like Service outside the Scope of practice of auditors(sec. 201), Preapproval requirements(sec. 202), audit partner rotation(sec. 203), auditor reports to audit committees(sec. 204) etc. of the Sarbanes-Oxley Act(SOA).

The second, I think that we must enhance the financial disclosures for the corporate transparency. Namely, each financial report that contains

financial statement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under the title IV of the above SOA(sec. 401) and the commission required the adoption of the code of ethics for senior financial officers(sec. 406) etc.